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시송달) 공고 제2026-19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취업지원 취소)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수급자격인정 철회(취업지원 취소) 결정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1. 4.

대 구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인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취소)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O호 (03.02.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하 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취업지원 취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수급자격 인정일 이후 연락두절 출석통지서 2회 발송에도 미출석	-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취소	폐문 부재

4. 공고기간: 2026. 11. 4. ~ 2026. 11. 18.(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이정윤(Tel. 053-667-6116)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